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이수O	95.01.2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요청으로 관련 서식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미제출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3회 미제출 (2회차: 3.19., 3회차: 4.19., 4회차: 5.20.)	○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제한	폐문부재 (5.25.송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80번길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06.08. ~ 2021.06.2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가현(Tel. 031-8024-9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